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20일

예 천 군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신청 위치 (인접 지번)	지목	사용 면적 (㎡)	사용허가 목적	허가기간
예천읍 왕신리 601번지 (예천읍 왕신리 598번지)	구거	0.25	광케이블 이설을 위한 통신전주 설치	허가일로부터 10년
효자면 초항리 319번지 (효자면 초항리 110번지)	구거	17	단독주택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사용	허가일로부터 10년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06. 20. ~ 2023. 07. 04.

3.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열람.

4.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문의사항 : 예천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54-650-6567)